공고 제 30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02일

흥남동장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남 *실	남 *실 1983-03-27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.1로 (대명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0-26